

게시판

■ 공고

-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(안)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
-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 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

■ 고시

- 텔레비전자막방송에관한송신의 표준방식
- 기술계·기능직종사자중연구활동에 종사하는자

◎ 정보통신부공고 제 1996-115 호

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(안)입법예고

(공고일 96. 12. 5)

1. 개정취지

「경쟁력 10%이상 높이기」의 일환으로 현재 그 이용이 대중화되어 있는 이동전화 등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인하하고 소액납부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, 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따라 그 대상 무선국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을 이동전화, 주파수공용무선전화, 개인휴대전화 등으로 정함.
- 현재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1,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2,500원 미만인 경

우 이를 면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.

다. 이동전화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보다 25% 인하함.

3. 의견제출

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1996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(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)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것은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기획과(전화 750-241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

◎ 통상산업부공고 제 1996-135 호

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(안)입법예고

(공고일 96. 11. 18)

1. 개정취지

중소기업청의 설립에 따른 정부조직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시행령이 정비되었고 ('96.2.)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할 경우의 창업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개시일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- 나.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에 창업지원자금으로부터 출자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및 승인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다. 창업투자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창업지원자금을 손실금으로 충당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.
- 라.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항중 변경신청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(참조 : 창업지원과장, 전화 : 503-793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◎ 통상산업부공고 제 1996-136 호

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

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(안)입법예고

(공고일 96. 11. 18)

1. 개정취지

중소기업청의 설립에 따른 정부조직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비되었고 ('96.2.)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정부조직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대해 관련조문을 정비함.

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(참조 : 경영지원과장, 전화 : 503-793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◎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6-100 호

텔레비전자막방송에관한송신의표준방식

(고시일 96. 11. 16)

1. 주파수 대역폭

텔레비전 자막방송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폭은 6MHz로 하며, 자막방송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는 텔레비전방송의 영상신호 반송주파수로 한다.

2. 변조

- 가. 자막방송 신호 반송파의 변조방식은 진폭변조

- 로 한다.
- 나. 진폭변조된 전파의 복사전력은 자막방송신호가 “0” 레벨에서 “1” 레벨로 변환하는 때에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.
3. 동기신호
- 가. 동기신호는 수직동기펄스, 수평동기펄스, 동화펄스 및 칼라버스트로 구성된다.
- 나. 수평동기펄스의 주파수는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(체신부고시 제 1985 - 46호)제 2 항에 규정하는 색신호 부반송파 주파수의 455분의 2로 한다.
- 다. 수직동기펄스의 주파수는 수평동기펄스 주파수의 525분의 2로 한다.
4. 자막방송신호의 구성
- 가. 자막방송 신호의 형식은 진폭변조된 2진 NRZ펄스로 한다.
- 나. 자막방송 신호의 단일펄스의 스펙트럼은 55%에서 100%까지의 Roll-off 특성을 갖는 Raised Cosine 필터와 같은 스펙트럼을 갖는 펄스파형이어야 한다.
- 다. 자막방송 신호의 진폭의 정상치는 “0” 레벨은 $0 \pm 2\text{IRE}$, “1” 레벨은 $50 \pm 2\text{IRE}$ 로 한다.
- 라. 클럭주파수는 수평주사주파수의 32배인 503,496. 32Hz이어야 한다.
5. 데이터라인의 중첩위치
- 데이터라인은 주사선중 한글은 284라인에, 영어는 21라인에 중첩하는 것으로 한다.
6. 데이터라인의 구성
- 가. 데이터라인은 한 라인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총량
- 을 말한다.
- 나. 데이터라인은 클럭동기 13비트, 바이트동기 3비트, 첫째 데이터 8비트, 둘째 데이터 8비트로 구성되며 별표 1과 같다.
- 다. 한 데이터라인의 데이터 전송용량은 2바이트이다.
7. 표현방식
- 가. 자막데이터는 한글의 경우, 표현방식은 KSC-5601 완성형 코드방식을 사용하며, 한글은 16행에서 40행, 특수문자는 1행에서 2행, 영문 및 숫자는 3행, 복자음은 4행, 사용자 정의문자는 13행에서 15행을 사용한다.
- 나. 자막데이터는 영어의 경우 EIA-608 규격을 따른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◎ 과학기술처고시 제 1996-42호

기술계·기능직 종사자종 연구활동에 종사하는자

(고시일 96. 11. 21)

기술계·기능직 종사자종 과학기술처장관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.

-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부서, 연구실, 연구팀 등 연구담당 조직에 소속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실험 장비 및 시설가동, 시험결과 분석 및 정리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기술계 기능직의 급에 상당하는 해당 직원